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5002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현창윤, 이보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
변 론 종 결 2020. 12. 2.
판 결 선 고 2021. 2. 3.

주 문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1.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3. 21. 접수 제61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 등기소 2013. 3. 21. 접수 제61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피고는 2018. 10. 10.자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신청서에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5지분에 관하여 2013. 3. 2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3. 21. 제61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기재하였다. 위 예비적 청구취지 추가신청서 추가이유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5 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나머지 2/5 지분에 관하여는 무권리자 처분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제출된 2019. 11. 18.자 원고 준비서면에는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청구원인을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청구 취지 제1항 전체는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 감축한 것이어서 예비적 청구라고 볼 수 없고, 위 청구 취지 제2항 전체는 주위적 청구와 양립가능하지만 당사자가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로 표시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람이고, C은 D의 처이다.

나. D은 2013. 1. 29. 사망하였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C은 2013. 3.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과 강원 평창군 E 임야 692㎡, F 임야 1,100㎡, G 임야 218㎡를 9,500만 원에 매도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61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라. D 사망에 관한 상속포기 신고

C과 H, I(D과 C 사이의 아들들이다)은 2013. 4. 15. D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3느단317호), 2013. 5. 2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J 사망에 관한 상속포기 신고

D의 부친인 J은 2013. 5. 23. 사망하였고, J의 상속인으로는 J의 딸인 K, L(M이었으나 미국국적 취득 후 L으로 성이 변경되었다), 대습상속인인 C, H, I이 있었다. C과 H, I은 2013. 6. 18. J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서울가정법원 2013느단5282호)를 하였고, 2013. 8. 1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바. 원고와 C 사이의 대여금 소송

1) 원고는 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565,550,000원의 대여금 등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D을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991호, 이하 '제1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D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실이 밝혀지자 C, H, I으로 피고표시정정을 하였고, 이후 H, I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C이 단독으로 피고가 되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고양시 일산동구 N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300,000,000원② D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한 대여금 135,550,000원③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대여한 100,000,000원④ 도로 개설비용 30,000,000원 |
|---|

2) 제1 관련소송 제1심 법원은 2016. 10. 13. 원고 일부승소 판결(265,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을 하였다.

3) 제1 관련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10698호) 법원은 2018. 2. 29. 원고의 위 주장 중 위 ②, ③ 부분은 인정하되 위 ①, ④ 부분은 배척하고, D의 사망으로 인한 C의 상속분을 3/5으로 보아,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8다22107호) 계속 중이다.

C은 원고에게 141,330,000원[= (② 135,550,000원 + ③ 100,000,000원) × C의 상속분 3/5] 및 그 중 81,33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2018. 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 C의 상속포기에 관하여

1) C은 제1 관련소송에서 위 라.항 기재 상속포기 신고 수리를 들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제1 관련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은 아래 사실을 인정하면서, C은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D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아 위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C은 D 사망 직후인 2013. 1. 30.부터 2013. 4. 3.까지 O으로부터 D의 O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았다.
② D은 강원 평창군 P 임야 9,917㎡를 C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C은 2013. 3. 21. B에게 위 토지에서 분할된 E 임야 692㎡, Q 임야 1,060㎡, F 임야 1,100㎡를 매도하였다.

2) 이와 같이 C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으므로, D의 재산상속에 관한 상속인은 C,

J이 되고, 상속분은 제1 관련소송 항소심 법원에서 본 바와 같이 C 3/5, J 2/5이다.

아. 원고와 R, S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1) C은 R, S에게 2013. 3. 15. 천안시 T 대 1,145.2㎡를 매도하고 2013. 3. 19.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2) 원고는 R, S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791호, 이하 '제2 관련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18. 7. 4. '위 매매계약일 당시 C은 350,579,059원(=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398,444,100원 - C 고유의 채무 47,865,041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갑18. 52),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39318호)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1, 14, 18, 19, 52, 을2, 9, 10(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제1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책임재산의 범위

1) 이 사건 각 토지가 D이 C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D과 C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이들 사이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는 유효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C의 상속지분 3/5 지분에 관하여 보면, 수탁자인 C이 신탁자인 D의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혼동으로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법률관계가 소멸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중 3/5 지분(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국적으로 취득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J 또는 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2/5 지분에 관하여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등 참조), 위 지분에 관하여 J 또는 J의 상속인들을 신탁자, C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러한 경우 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등 참조), 위 2/5 지분도 C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이 된다.

3) 결국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는 C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나. C의 무자력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C이 2013. 3. 5.부터 2013. 4. 15.까지 사이에 처분한 재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갑1-1, 18, 52).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아래 각 처분행위의 일시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C이 처분 마지막 날인 2013. 4. 15.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C은 D의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부동산을 처분한 날 또는 그 다음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매수인들 중 R, S, 피고, U는 친척 또는 지인인 점을 고려하면, 아래 각 처분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이를 일괄하여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3. 3. 21. 기준 C의 재산에서 아래 재산들 및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제외하고 C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한다.

순번	처분 재산	일시	금액(원)	상대방	비고
1	상주시 V 답 2,545㎡	2013. 3. 5.	92,000,000	W	
2	천안시 T 대 1,145.2㎡	2013. 3. 15.	407,000,000	R,S	C의 언니와 형부
3	O에 대한 배당금 채권	2013. 3. 19.	135,000,000		직접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변제받음
		2013. 4. 3.	90,575,000		
4	이 사건 토지 등 8필지	2013. 3. 21.	95,000,000	피고	C의 지인
5	충남 부여군 X 답 2,192㎡	2013. 3. 25.	65,000,000	Y	
6	충남 부여군 Z 전 1,456㎡, AA 전 693㎡	2013. 3. 25.	80,000,000	AB	
7	서울 강남구 AC아파트	2013. 3. 27.	967,000,000	AE	

	AD호				
8	충남 부여군 남면 AF 답 2,860㎡ 중 1/2 지분	2013. 4. 15.	25,000,000	U	C의 지인
합계			1,956,575,000		

2) C 고유 재산

가) 인정하는 부분

	재산 또는 채무	금액(원)	인정근거
적극 재산	고양시 일산동구 N 임야 1,289㎡ 중 1/2 지분	244,910,000	다툼 없음
	강원 평창군 P 임야 5,552㎡ 중 4,958/9,917 지분	41,994,269	갑1-2, 갑18, 52 원고와 AG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단619, 2013가단626(병합)]에서 'C은 AG에게 위 토지 중 3,306/9,917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653/9,917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위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 4,958/9,917에 관하여 가액을 산정함. 위 나머지 지분에 관한 가액은 '제2 관련소송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강원 평창군 P 임야 5,552㎡의 가액 83,997,009원 × 4,958/9,917 = 41,994,269원'으로 산정함.
소극 재산	AH조합에 대한 채무	-142,772,050	다툼 없음
	R에 대한 채무	-30,000,000	다툼 없음
	S에 대한 채무	-50,000,000	다툼 없음
	AI조합 서울은평에 대한 채무	-60,000,000	다툼 없음
	K에 대한 채무	-154,000,000	제2 관련소송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갑18, 52)
합계		-149,867,781	

나) 현금자산 161,900,000원(피고 주장의 적극재산), AI조합에 대한 채무 -

96,535,207원(원고 주장의 소극재산)

C의 AJ조합 계좌로 2013. 3. 25.부터 2013. 3. 26.까지 사이에 입금된 금원은 161,900,000원이 아닌 130,000,000원인데(갑48, 피고는 같은 기간 출금된 금원도 입금된 금원으로 착오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항에서 본 부동산의 처분일자나 매매대금을 볼 때 위 금원은 C이 갖고 있던 별도의 적극재산이 아니라 위 1)항 표 5, 6번의 처분대가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입금액 중 일부는 C의 AJ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소비된 것으로 보아, 위 현금자산은 적극재산에서, AJ조합에 대한 위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각 제외한다.

다) K에 대한 채무 -154,000,00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K이 R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2225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R로부터 152,000,00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위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5. 2. 17. 피고 주장의 위 소송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된다(을11).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K이 채무를 변제받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이 무자력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이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C의 자력이 회복되었다는 항변으로 선택하여 보더라도 아래에서 4)항에서 보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채무초과액수가 K에 대한 채무액수를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C의 자력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C이 강제집행면탈행위에 따른 원고의 채권회수불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241,531,677원

(1) 원고는 C의 강제집행면탈행위로 인하여 제1 관련소송 항소심에서 인정한 원

고의 D에 대한 채권 전액[235,550,000원(= 135,550,00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2013. 3. 15. 기준으로 한 위 채권원리금 상당액을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의 채권침해 당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가 없었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정액 이상으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와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때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액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법행위 당시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이 되는 채무자 부담의 채무에 포함되며, 더 나아가 비교대상 채무에 해당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질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 1)항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우선 'C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과 C의 채권자들의 채권액수 및 지위(우선 변제력 유무) 등을 모두 밝혀 C의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었을 채권액'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원고의 주장의 위 채무는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3) D의 상속재산

가) 인정하는 부분

(1) 적극재산

순번	재산	금액(원)	인정근거
1	아산시 AK 임야 104,280㎡, AL 임야 14,420㎡	841,980,000	다툼 없음
2	아산시 AM 임야 14,732㎡	154,686,000	다툼 없음
3	화성시 AN 전 188㎡ 등 9필지 ¹⁾	967,410,000	다툼 없음
4	천안시 동남구 AO 답 4,015㎡	256,960,000	다툼 없음
5	아산시 AP 대 1,306㎡ 및 지상 건물, AQ 전 1,296㎡	477,034,000	다툼 없음
6	아산시 AR 전 7,230㎡	339,810,000	다툼 없음
7	상주시 AS 임야 7,791㎡, AT 임야 11,608㎡	34,154,800	다툼 없음
8	고양시 일산동구 N 임야 1,289㎡ 중 1/2 지분	244,910,000	다툼 없음
9	AU에 대한 채권	552,312,000	제2 관련소송 제1심 판결(갑18. 52)과 같이 인정함.

			AU 명의로 된 아산시 AV 전 5,683㎡ 등 8필지가 D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D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0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 890,312,000원(2013. 5. 28. 기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인 A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38,000,000원을 뺀 나머지 552,312,000원을 AU에 대한 채권액으로 인정함.
	합계	3,869,256,800	

(2) 소극재산

순번	채무	금액(원)	인정근거
1	적극재산 순번1, 2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중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W 청구금액	-661,074,819	다툼 없음
2	적극재산 순번1, 2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중 대전지방법원 AX 청구금액	-622,450,197	다툼 없음
3	적극재산 순번3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807,131,686	다툼 없음
4	적극재산 순번4, 5, 6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중 AJ조합에 대한 채무	-674,512,452	다툼 없음
5	적극재산 순번5 건물의 임차인 AY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30,000,000	다툼 없음
6	적극재산 순번6 부동산에 관한 AZ 주식회사의 가압류 청구금액	-49,999,630	제2 관련소송 제1심 판결(갑18. 52)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BA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을 더하여 -189,999,630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아래 순번9의 채무액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49,999,630원만 인정함.
7	적극재산 순번7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	-8,160,986	다툼 없음
8	적극재산 순번8 부동산에 관한	-142,772,050	다툼 없음

1) BB 전 811㎡, BC 도로 873㎡, BD 임야 210㎡, BE 임야 774㎡, BF 임야 597㎡, BG 전 20㎡, BH 전 579㎡, BI 전 1,113㎡

	피담보채무		
9	BA에 대한 차용금채무	-480,000,000	갑22-1,2, 갑44, 갑45, 갑46-1,2,3
10	BJ에 대한 차용금채무	-150,000,000	다툼 없음
11	BK에 대한 매매대금채무	-79,656,164	갑1-1,2, 갑21-1,2, 갑51-1,2 D은 BK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BL 임야 중 3,000평을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0.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BK에게 7,000만 원 및 201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3. 3. 21. 현재 원리금을 산정하면 '79,656,164원=[70,000,000원+70,000,000원×0.05×{2+277/365(2010.6.18.~2013. 3. 21.)}]'이 됨.
12	제1 관련소송 항소심에서 인정된 원고에 대한 채무	-242,054,048	2013. 3. 21. 현재 원리금은 '242,054,048원=235,550,000원(=135,550,000원+100,000,000원+1,504,048원(=135,550,000원×0.05×81/365(2012.12.31.~2013.3.21.))+5,000,000원(=100,000,000원×0.25×73/365(2013.1.8.~2013.3.21.))'임
13	피고 및 BM에 대한 차용금 채무	-241,470,000	갑15,34,35,을14-1,2,을15,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2011. 11. 21.부터 2012. 12. 13.까지 사이에 D의 계좌로 입금한 741,670,000원²⁾과 피고의 남편 BM가 2010. 10. 4.부터 2013. 1. 14.까지 사이에 D의 계좌로 입금한 179,950,000원³⁾ 합계액 921,620,000원에서 다음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41,470,000원을 D의 차용금 채무로 봄 ① 피고가 2012. 7. 25. D으로부터 받은 30,000,000원 ② BM가 D으로부터 2010. 12. 6.부터 2012. 9. 7.까지 사이에 받은 90,150,000원⁴⁾ ③ 피고가 C의 BN은행 계좌(BO)로부터 2012. 9. 25. 받은 25,000,000원 ④ BM가 C의 위 계좌로부터 받은 135,000,000원⁵⁾

			⑤ BM가 2013. 2. 14. O으로부터 받은 400,000,000원
	합계	-4,189,282,032	

(3) 적극재산 + 소극재산 = 3,869,256,800원 - 4,189,282,032원 = -320,025,232원

나) 평택시 BP 지상 건물 가액 87,000,000원(피고 주장의 적극재산), BQ에 대한 위 부동산 매매대금 채무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 주장의 소극재산)

갑20, 50에 의하면 ① BQ은 2009. 8. 7. D으로부터 BR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위 부동산을 매수하되,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대토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D이 위 부동산을 70,000,000원(은행이자 별도)에 재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 당시 은행이자는 연 5%였던 사실, ② BQ은 위 약정에 따라 2009. 8. 11.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87,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2012. 8. 31. 위 부동산이 BR구역에서 제외된 사실, ③ 이후 BQ은 위 약정에 기하여 C을 상대로 'C은 BQ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BQ에게 42,000,000원(= 70,000,000원 × 3/5)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47225호),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D이 BQ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아니므로, 위 부동

2) 2011. 11. 21. 300,000,000원(제1 관련소송 제1심과 항소심 및 제2 관련소송 제1심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받음) 2012. 7. 9. 29,700,000원, 2012. 8. 25. 64,350,000원, 2012. 11. 9. 152,620,000원(90,000,000원+62,620,000원), 2012. 12. 13. 195,000,000원(10,000,000원+90,000,000원+95,000,000원)

3) 2010. 10. 4. 97,000,000원, 2010. 11. 25. 43,650,000원, 2011. 8. 5. 19,500,000원, 2013. 1. 14. 19,800,000원

4) 2010. 12. 6. 6,000,000원, 2010. 12. 28. 5,150,000원, 2011. 5. 11. 30,000,000원(= 6,000,000원×5회), 2011. 10. 1. 9,000,000원(6,000,000원+3,000,000원), 2012. 9. 7. 40,000,000원

5) 2012. 10. 2. 85,000,000원, 2013. 2. 28. 40,000,000원, 2013. 3. 2. 10,000,000원

산 자체를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BQ에 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 매매대금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관계를 보면 위 채무와 채권을 동시에 반영하거나,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BQ이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대금 87,000,000원은 대토보상을 기대하고 산정한 금액이므로 위 대금 상당액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D이 BQ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위 채무와 채권액의 합계액은 0원이 되므로, 위 채무와 채권을 동시에 반영하여도 무자력을 판단하는데에 영향이 없어 동시에 제외하기로 한다.

다) BS에 대한 500,000,000원의 채무(원고 주장의 소극재산)

BS가 2011. 11. 6. D과 사이에 모든 금전관계가 정산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12), BS가 C, H, I을 상대로 D의 상속채무를 이행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16339호, 같은 법원 2015나34442호, 을13)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위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라) D의 1,020,000,000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2013년 종합소득세 채무 428,000,000원(원고 주장의 소극재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3. 3. 21. 당시 C의 재산은 -341,882,921원[= D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 -192,015,140원(= -320,025,232원 $\times$ 3/5) - C 고유의 채무 149,867,781원]으로서 채무초과상태였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위한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별 지 목 록

1. 강원 평창군 BT 임야 850m²
2. 강원 평창군 BU 임야 445m²
3. 강원 평창군 BV 임야 25m²6)
4. 강원 평창군 BW 임야 130m²7)
5. 강원 평창군 Q 임야 1,060m²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관할)

-이 상-

6) 소장첨부 별지 목록에 기재된 해당 토지의 면적 130m²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7) 소장첨부 별지 목록에 기재된 해당 토지의 면적 25m²는 오기임이 명백하다.